(2024)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2024년 1월 10일 발행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24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법 제18조) ④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임기 3년, 5명 이내 비상근)을 둘 수 있다.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법 제18조) ④삭제(2024.01.09.)→신설 규정(2024.07.10. 시행) ④ 전문위원회 :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녹색물류전문위원회,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사·연구·검토한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다음의 사항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연구·검토를 요청한 사항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의 사항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연구·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위원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제4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위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다음의 사람 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53-54	(3)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법 제60조의2)	(3)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법 제60조의2) → 전체 삭제(2024.01.09.)
66	31.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	31. 삭제
79	22번 문제 해설 다음과 같은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22번 문제 해설 수정 다음과 같은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86	37번 문제	37번 문제 → 삭제
91	47번 문제 47 물류정책기본법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등록증·지정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곳은?	47번 문제 47 물류정책기본법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등록증·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02	㉣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삭제
114	②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②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15	맨 상단 '④ 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다음 ⑤, ⑥ 추가	맨 상단 '④ 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다음 ⑤, ⑥ 추가 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2024. 1. 9.). ⑥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2024. 1. 9.).
123	④ 물류단지개발지침 포함사항 (박스) 1. ~ 2. ~ 3. ~ 4. ~ 5.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6. ~ 7. ~ 8. ~	④ 물류단지개발지침 포함사항 (박스) 3. ~ 4. ~ 3. ~ 4. ~ 5.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6. ~ 7. ~ 8. ~
128	③ 환지대상자 :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 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③ 환지대상자 :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물류단지 안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토지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 또는 법령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131	맨 상단 박스 1. ~ 2. ~ 3. ~ 4. ~ 5. ~ 6. 문화재 조사비	맨 상단 박스 1. ~ 2. ~ 3. ~ 4. ~ 5. ~ 6. 국가유산 조사비
153	14번 문제 14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되, 물류단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14번 문제 삭제 14 삭제

157	정답 및 해설 10 × 7일 → 30일	정답 및 해설 10 ○
170	24번 문제	24번 문제 전체 삭제
175	33번 문제 해설 ⑤ 물류정책분과위원회 →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3번 문제 해설 ⑤ 규정 삭제되었음
240	12번 문제 보기 ① ①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12번 문제 보기 ① 삭제 ① 삭제
244	20번 문제 보기 ④ ④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번 문제 보기 ④ 수정 ④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75	17. 법 제59조에 따라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7. 삭제
283	② 처분의 가중 또는 경감 ③ 중복 위반시 처분 기준	② 처분의 가중 또는 경감 → 전체 삭제 ③ 중복 위반시 처분 기준 → 전체 삭제
293	주석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천만원 이하	주석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복합물류터미널사업(5천만원 이하), 물류창고업(1천만원 이하)
303	(2)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6조) ⑤	(2)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6조) ⑤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 ⑦ ⑥ ①~③ 및 ⑤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49	(9) 분쟁조정의 신청(법 제52조)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	(9) 분쟁조정의 신청(법 제52조)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

<table>
<tr><td></td><td>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td><td>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td></tr>
<tr><td>354</td><td>⑤ 포상금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td><td>⑤ 포상금은 (삭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td></tr>
<tr><td>358</td><td>2번 문제
02 ~ 4만㎥ ~</td><td>2번 문제
02 ~ 4만㎤ ~</td></tr>
<tr><td>369</td><td>7번 해설 전체 삭제 후 수정</td><td>7번 해설 수정
③ 그 기간이 끝난 날에 →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③ → ④</td></tr>
<tr><td>377</td><td>문제 24번 보기 ①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td><td>문제 24번 보기 ①
① 삭제</td></tr>
<tr><td>384</td><td>문제 38번 해설 보충</td><td>문제 38번 해설 보충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개시를 명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업무개시를 명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td></tr>
<tr><td>408</td><td>물류관련법규에 규정된 인가
<table><tr><td>법규</td><td>인가권자</td><td>인가 사항</td></tr><tr><td>「항만운송사업법」</td><td>해양수산부장관</td><td>•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임 및 요금을 정하는 경우</td></tr></table></td><td>물류관련법규에 규정된 인가
<table><tr><td>법규</td><td>인가권자</td><td>인가 사항</td></tr><tr><td>「항만운송사업법」</td><td>관리청</td><td>•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임 및 요금을 정하는 경우</td></tr></table></td></tr>
<tr><td>424</td><td>② 점용허가기간
<table><tr><td>1. 철골조·철근콘트리트조·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0년</td></tr></table>㉡ 허가를 받은 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위 ㉠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td><td>② 점용허가기간
<table><tr><td>1. 철골조·철근콘트리트조·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50년</td></tr></table>㉡ 삭제
기존 ㉢ → ㉡</td></tr>
</table>

433	문제 26번 정답 ○	문제 26번 정답 변경 × 30년 → 50년
441	16번 문제 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해당되는 시설물별로 규정되어 있는 점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30년이다.	16번 문제 ① 삭제 ③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50년이다.
481	21번 해설 추가	21번 해설 추가 × 10일 → 20일, 해양수산부장관 → 관리청
494	27번 문제 보기 ⑤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27번 해설 ④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영 제25조 제2항). ⑤ 영 제25조 제5항	27번 문제 보기 ⑤ ⑤ 삭제 27번 해설 ④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단서 규정 삭제) (영 제25조 제2항). ⑤ 삭제
516	③ 경매사의 면직 : ~ ④ 경매사 임면의 신고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경매사의 업무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④ 경매사의 면직 : ~ ⑤ 경매사 임면의 신고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17	㉡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544	7번 문제 보기 ②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번 문제 보기 ② 변경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559	10번 문제 해설 추가	10번 문제 해설 추가 ① 시험 시행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나, 법 개정(2024.1.9., 시행 2024.7.10.)으로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책 출간 후 법이 개정되어 수정사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쇄 시 반영하여 출간하겠습니다.